#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66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 송재봉·허성무·이재관

임호선 • 정진욱 • 이성윤

이연희 · 황명선 · 김우영

이수진 • 이광희 • 임미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63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4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첨단산업인재인력개발비"로 한다.

4. 수도권 밖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소재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과 관련한 기업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산업인재의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조에서 "첨단산업인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4(첨단산업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산업인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첨단산업과 관련한 기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첨단산업기업"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수도권 밖의 사업장(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말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첨단산업기업에취업하거나 해당 첨단산업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 ·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첨단산업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②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의3 또는 제30조에 따른 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의 기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첨단산업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31일까지, 제4호는 2029년 12월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31일까지-----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도권 밖 또는 「지방자치 <신 설>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본점 또는 주 ②·③ (생 략)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 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 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 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 分經理)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신설> 사무소가 소재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과 관련한 기업이 같은 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첨단산업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첨단산업인 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u>제1항제1호</u>, 제2호 또는 제4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 기술연구개발비 및 첨단산업인 재인력개발비-----

-----.

⑤·⑥ (현행과 같음)

제63조의4(첨단산업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첨단산업인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첨단산업

과 관련한 기업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 서 "첨단산업기업"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수도권 밖의 사업장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 소 또는 공장시설을 말한다)에 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 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 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른 첨단산업기 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첨단산 업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 는 합병 · 분할 · 사업양도 등으 로 다른 첨단산업기업으로 고 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 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 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 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 의3 또는 제30조에 따른 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

<u>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u> 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